

카) 교원 회복 지원 휴가

- (1) 소속기관(학교 등)의 장은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피해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
- 타)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된 순회교사에 대해서는 연 5일의 범위에서 학습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

**마. 공무외의 국외여행**

1) 기본방침

- 가)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은 휴업일(여름·겨울 및 학기말 휴업일을 말함)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
- 나)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휴업일 중 공무외의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 기회를 부여함  
※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공무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와 별도로 실시
- 다) 자율연수 목적의 공무외 국외여행 인정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·도 교육감(국립은 총장 또는 학교장)이 정함

2) 실시 방법

- 가) 휴가일수 범위내 공무외 국외여행 등

(1) 사유

-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, 질병의 치료, 친지방문, 견문목적, 취미활동, 가족기념일 여행, 기타 필요한 경우

(2) 기간

-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중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음
- 교원(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)이 여름·겨울 및 학기말 등의 휴업일에 공무외의 국외 여행을 할 경우에도 「국가공무원복무규정」에 의한 휴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실시함. 다만, 「교육공무원법」 제41조에 의한 연수목적의 국외여행은 별도임

(3) 절차

- (가)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위한 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「비고」란에 「공무외의 국외여행」임을 표시한 후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음. 다만, 교장은 직근 상급 기관의 장(교육장)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되, 나이스 공람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근 상급기관에서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함

- (나) 연가의 경우에는 본인의 법정 연가 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을 허가할 수 있음

※ 토요일, 공휴일(방학 등 휴업일은 공휴일이 아님)만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경우 “기타”로 상신(공무 외국외여행 나이스상신방법 참고)

- 나) 『교육공무원법』 제41조를 활용한 공무외 국외여행(이하 “국외자율연수”)